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28

발의연월일 : 2021. 10. 12.

발 의 자:김성주・이학영・홍정민

고민정・홍성국・조승래

박상혁 · 최혜영 · 남인순

김민석 • 이용빈 • 신영대

고용진 · 김원이 · 황운하

임호선 · 최종유 · 전용기

윤준병 · 소병철 · 허종식

정춘숙 • 서영석 • 양정숙

의원(24인)

제안이유

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「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827호) 및 「국제입양법안」(의안번호 제12826호)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,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「입양특례법」 및 「국제입양법」에 따른 입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로 규정함(제10조의2제2

항제9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2827호) 및 「국제입양법안」(의안번호 제12826호)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「입양특례법」"을 "「입양특례법」 및 「국제입양법」"으로, "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"을 "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바목(종전의 다목) 중 "「입양특례법」"을 "「입양특례법」 및 「국제입양법」"으로 한다.

- 나.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
- 다. 「입양특례법」 및 「국제입양법」에 따른 입양심의위원회 운 영 지원
- 라.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했 아 혀 개 정 제10조의2(아동권리보장원의 설 제10조의2(아동권리보장원의 설 립 및 운영) ① (생 략) 립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. 1. ~ 8. (현행과 같음) 1. ~ 8. (생략) 9.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국내 9. 「입양특례법」 및 「국제입 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 양법」-----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----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. (현행과 같음) 가. (생 략) <신 설> 나.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 영 다. 「입양특례법」 및 「국 <신 설> 제입양법 | 에 따른 입양심 의위원회 운영 지원 라.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<신 설> 업무 마. (현행 나목과 같음) 나. (생 략) <u>바.</u> ----- <u>「입양</u>특례법」 <u>다.</u> 그 밖에 <u>「입양특례법」</u> 및 「국제입양법」-----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. ~ 13. (생 략) 10. ~ 13. (현행과 같음) ③ ~ ⑧ (생 략) ③ ~ ⑧ (현행과 같음)